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2. 21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3년 2월 9일
- 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2월 16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2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 - 안전보안관 위촉, 교육 및 임기(안 제3조 ~ 제4조)
 - 대표단 구성, 활동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 ~ 제7조)
 - 관리 및 해촉, 표창(안 제8조 ~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정진)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전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」 이고 10개의 본칙 조문과 2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재난·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또는 전문가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등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그 임무와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6조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와 안전위험 요인 신고,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에 참여,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,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표 유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등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,
-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과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기 시행중인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·정착화하여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취

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3년 2월

발의자: 유승용, 000(0인)

1. 제안이유

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안전보안관 위촉, 교육 및 임기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대표단 구성, 활동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5조 ~ 제7조)

라. 관리 및 해촉, 표창(안 제7조 ~ 제8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2.9. ~ 2023.2.13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안전보안관”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되어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안전보안관 위촉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, 100명 이내로 한다.

1. 재난·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
3.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, 학교,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
4. 재난·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
5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

제4조(교육 및 임기)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

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대표단 구성)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,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선임한다

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보안관의 활동)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
2.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
3.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
4.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,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
5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활동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관리 및 해촉)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,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1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
3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
4. 그 밖에 질병,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표창)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영등포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.